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항목에 따라 전체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주택 취득자 금조달방식을 결정하여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항목 | | 상세항목 | 세부내용 | |
|---------------------|-------------------------|---|---|--|
| ① 자금 조달 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 |
| | |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채권)매도액 |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
| | | | 이에 준하는 자금 | 이에 준하는 자금 |
| | | ④ 증여·상속 등 | 가족 등 증여·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
| |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중인 현금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
| | | |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펀드, 보험, 가상화폐 등) |
| | 이에 준하는 자금 | | 미래소득 및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 |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 매도액 |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 |
| | | 기존 보증(전세)금 |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 | | 중전부동산 권리가액 |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 |
| | | 이에 준하는 자금 |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 |
| | 차입 금 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 주택담보대출 |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
| | | | 신용대출 |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
| | | | 그 밖의 대출 |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중도금집단대출 등) |
| ⑨ 임대보증금 | | 금회 취득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 | |
| ⑩ 회사지원금·사채 | |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
| ⑪ 그 밖의 차입금 |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 | |
| ⑫ 조달자금 지급방식 | ⑬ 계좌이체 금액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 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 |
| | ⑭ 보증금·대출금 승계 | 당 현장 해당사항 없음(작성 생략) | | |
| | ⑮ 현금 등 기타지급 | 당 현장 해당사항 없음(작성 생략) | | |
| ⑯ 입주계획 | 본인입주 |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 | |
| | 본인 외 가족입주 | 본인 외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 | |
| | 임대(전월세) |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 예정인 경우 | | |
| |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 당 현장 해당사항 없음(작성 생략) | | |

※ 당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만을 안내하며, 자금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샘플은 참고용이며,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 등을 참고하시어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 결정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